

추가약정서

(수도권·규제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무자: (인)

주소:

채무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

이 약정서는 **무주택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다주택자^{주2)}인 매도인이 소유한 수도권·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며,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^{주3)}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**

- 주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- 주2) “다주택자”라 함은 매도인이 포함된 “세대”를 기준으로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매도주택 포함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로, 매도인이 포함된 “세대”라 함은 주1)의 세대와 동일합니다.
- 주3)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'26.4.1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의미하며, 아래의 갱신계약의 종료일을 포함합니다.
- 1) '26.4.2 ~ '26.4.16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
- 2) '26.7.31까지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

제2조 (구입대상 주택)
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3조 (전입의무)

-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**제2조의 구입 대상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.**
-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,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4조 (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)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**기한의 이익은 상실**하게 되고, 그에 따라 **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**를 집니다.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**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**

제5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**본 대출 잔액 일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악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4)} 주택 관련 대출^{주5)}이 제한됩니다.**

주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5) 「은행업감독규정」 별표6 <제1호>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**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**
2. **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**하는 경우

